

각종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화순군의회 기금운용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목 차

I. 「특위」의 구성근거

II.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III. 조사실시 경과

1. 「특위」의 구성
2. 운영상황

IV. 조사결과

1. 주요 지적사항
2. 기타 지적사항
3. 결론(종합)

V. 처리의견

1. 시정및 처리요구 사항
2. 건의 사항

※. 주요 근거 서류(별첨)

각종 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결과보고서

I 「특위」의 구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II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 일반회계 세출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해 각종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바,
- 이의 운용실태를 일제조사하여 기금 조성의 적정성, 효율적 운영관리, 목적의 적정 사용등 합리적인 운용이 되도록 대안 모색이 필요
- 체육진흥기금의 일부가 러시아 펀드(듀얼턴 공사재 4호)에 예치되었으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원금마저 회수가 불투명하여 군민의 걱정 대상이 되고 있어 이의 예치 배경 및 대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 아울러, 그동안 기금운용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 하고 향후 적정한 기금운용으로 초기의 행정 목적을 달성도록 유도

2. 조사기간 : 2000. 5. 27 ~ 8. 31(97일간)

- 서류확인을 위한 자료요구 및 서류심사 : 5. 28 ~ 6. 7
 - 1차 자료요구 : 지급내역부등 6건(6. 8 접수)
 - 2차 자료요구 : 기금운용계획등 14건(6. 22 접수)
 - 3차 자료요구 : 장학금 지급자 명단등 2건(7. 8 접수)

- 서류심사 : 6. 8 ~ 7. 27
- 토론및 집행부 질의답변 : 7. 28 ~ 8. 24
- 보고서 작성및 검토 : 8. 25 ~ 8. 31

3. 조사대상

- 조사 대상기간 : '97. 1. 1 ~ 2000. 5. 30
- 조사대상 기금
 -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이 설치운영중인 각종기금(화순군 장학진흥기금등 9종)

III 조사실시 경과

1. 「특위」의 구성

- 일시 : 2000. 5. 25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 제안 : 문현근 의원
- 목적
 - 화순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의 조성.운용.집행 실태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고,
 - 보다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제시하여 기금이 소기의 행정 목적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
- 구성
 - 활동기간 : 2000. 5. 27 ~ 8. 31(97일간)
 - 인원 : 7명
 - 위원장 : 민용기 의원
 - 간사 : 박윤수 의원
 - 위원(5명): 조영길, 박병옥, 양동복, 문팔갑, 정해봉 의원

※ 제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7차 회의(7. 4)에서 보다 세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7. 5에서 8. 31까지 연장함.

2. 운영상황

(1) 2000. 5. 25(목) 11:00 제1차 회의

- 장소 : 특위 회의실
- 참석 : 7명
- 안건
 - ① 「특위」 구성(위원장, 간사선출)
 - 위원장 : 민용기 의원
 - 간 사 : 박윤수 의원
 - ② 기금운용 실태 조사 계획 의결
 - 조사대상 사무, 조사장소, 조사방법등 조사활동계획
의결 → 집행부 통보
 - 기금관련 각종 자료요구 → 지급내역부등 6종

(2) 2000. 6. 14(수), 14:00 제2차 회의

- 장소 : 특위 회의실
- 참석 : 6명
- 주요안건
 - ① 1차 요구자료와 관련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 ② 추가요구자료 : 기금운용 계획등 14건

(3) 2000. 6. 15 ~ 7. 26, 요구자료 및 관련서류 검토

- 방법 : 특위 위원별 개별 검토
- 검토서류 : 1.2차 요구자료 및 관련서류(20종)
 - 기금운용계획등 결산검사
 - 체육진흥기금의 한국투신(듀얼턴공사채4호)예치 배경 및 모라토리움 선언이후 조치 상황
 - 노인복지기금 미 사용 사유 및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목적외 대출여부
 - 농수산 진흥기금의 조성 및 대출 관련등

(4) 2000. 7. 27(목) 10:30, 제3차 회의

- 장소 : 특위 회의실
- 참석 : 5명

○ 주요내용 : 요구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총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 장학진흥기금 지급 대상의 적정성
- 체육진흥기금의 러시아 펀드(듀얼턴 공사채 4호) 예치 배경
- 노인복지기금의 집행유보 배경 등

(5) 2000. 7. 28 ~ 8. 21, 미진사항 정밀조사 실시

○ 방법 : 조사 착안사항 작성, 세부조사 실시

○ 조사실시 : 특위 위원별 개별 검토

○ 주요내용 : 「착안사항」 참조(별첨)

- 장학진흥기금등 9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조례규정 이행 여부 검토
-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관련, 조치 및 이행사항 확인

(6) 2000. 8. 22(화) 14:00, 제4차 회의

○ 장소 : 특위 회의실

○ 참석 : 6명

○ 주요내용 : 요구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환경과, 농산과, 건설과)

- 재활용품 판매기금의 집행
- 농수산 진흥기금의 조성 및 대출
- 재난관리,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2000. 8. 22 ~ 8. 29, 결과보고서 작성(초안) 및 검토

○ 방법 : 결고보고서(초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별 개별 검토 후, 「특위」 의결시 반영조치

○ 내용

- 보고서 내용상 누락사항
- 지적사항의 적정 여부
- 처리의견의 적정 여부 등

(8) 2000. 8. 31, 14:00 제5차 회의

○ 장소 : 특위 회의실

○ 참석 : 특위 위원 7명

- 주요안건
 - 조사 결과보고서 심의 및 채택 의결

IV 조사결과

- 금번 조사활동은 체육진흥기금의 러시아 펀드 예치로 막대한 군비의 손실이 예상되는바 이에대한 천저한 조사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 기타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용상황도 일제 점검해봄으로써 효율적 운용및 관리를 기하기 위해 실시함.
- 따라서, 그동안 3차에 걸쳐 요구한 자료심사, 관련 실과장의 보고 및 질의 답변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위주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작성함.

1. 주요지적사항

① 체육진흥기금 관리 소홀

체육진흥기금의 예치상황

- 기금조성 목표 : 1,000백만원
- 그동안 군비 출연금 : 550백만원('92~'98)
- 기금 예치 현황
 - 군금고(농협): 220,738,140원
 - 금고우대 자유적립 정기예금, 연 6.5%
 - 한국투자신탁(주) : 580,000,000원
 - 듀얼턴 공사채 4호 ('97. 1. 24 ~ 2000. 1. 24), 연 14.5%

- 체육진흥기금은 10억 원을 목표로 군비를 출연하고 있는데 '97. 1. 24일부터 2000. 1. 24(3년)까지 러시아 펀드인 듀얼턴 공사채형 4호에 연 14.5%의 높은 이자율로 예치하였으나 '98. 8. 17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원금마저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임
-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예치 상황을 조사한바 '96. 12. 27 군수께 보고서류에는 5억 8천만원을 갱신 예치하면서 알파단위형 공사채로 예치하도록 군수의 지시를 받고 자금을 인출, 예치하려했으나 예치 하려할 당시(월말경)에는 동 상품이 나팔러 예치할수 없으므로 '97. 1. 15 듀얼턴 공사채형 4호에 청약하여 '97. 1. 24 자금을 예치한 것임.
- 알파 단위형 상품이 없으면, 다시 군수께 보고하여 다른 상품에 예치코자하는 보고를 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실무선에서 임의 변경 예치함은 지휘계통을 문란한 처사로 판단되며,
- '98. 8. 17일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이후에는 즉시 「체육진흥조성및관리위원회」나 의회등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만기가 지난후에야 보고하여 문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고 판단됨.

② 노인복지 기금의 운용 소홀

기금현황

- 기금 : 157,670천원('94~'99)
 - 원금 : 100,000천원
 - 이자 : 57,670천원
- 집행 : 집행 실적없음.
-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매년이자수입의 90%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되어있으나 2000.

7. 30 현재까지 사용실적이 전무함.

- 또한,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2000. 7. 31 현재 57백만원 이상의 과실 수익금이 있음에도 한푼도 집행치 않고 있으며, 그 이유가 관내 251개의 노인당에 운동기구를 일괄 구입(개소당 500천원 소요판단)하여 지원키 위한 것이라는 것임
- 이는 실무진이 동 기금 운용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기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이러한 사실을 결정할시는 마땅히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동 기금의 집행을 유보하고 있음은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함.

(3)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목적외 사용

—— 자금현황(특별회계 예산) ——

- 예산액 : 467,317천원
- 집행계획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 세대당 1,000만원 기준 융자함.
- 동 기금의 집행상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목적외 사용자가 발견됨
 - '97년 동복면 신율리 김재길, 주택 소유자에게 전세금 5백 만원 융자
 - '97년 청풍면 차리 민정기, 농지구입자금 5백만원 융자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 무소유
 - '98년 한천면 한계리 박남현,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 3백만원 융자

- 동기금의 집행은 읍자를 받고자 하는자가 거주지 읍면의 새 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동 조례 제5조) 군수가 심사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 동 조례 제6조 ②항 1호에 의하면 읍자 받은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상환토록 할 수 있음.
- 본 특위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농지 구입자금을 읍자해간 사람이 아직까지 농지구입 사실이 없으며 주택을 소유한자가 전세금을 읍자 받는등 목적에 정확히 사용했는지가 심히 의심 스러움
- 그러나, 지금까지 읍자해준 이후 그 사용 실적을 확인해 보지 않고 있으며 또한 목적외 사용자의 회수조치 실적도 없음.

④ 농수산 진흥기금 조성 미진

기금 현황

- 기금총액 : 2,509 백만원
 - 원 금 : 2,369 백만원
 - 이 자 : 139 백만원
 - 집행액 : 1,947 백만원
- 농수산 진흥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제14조 ②항에 의하면 기금총액이 100억원에 이를때까지 매년 8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조성 실적을 보면 '97년에 642백만원, '98년도 200백만원, '99년에 100백만원, 2000년 100백만원 (당초 예산계상)등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성 목표액에 매우 미달되고 있음.

V. 처리의견

1. 시정및 처리요구 사항

- 금번 조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할 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토록 요구하고,
- 개선이나 견의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을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토록 조치

① 체육진흥기금 예탁으로인한 손실초래 대책 강구

- '96. 12. 27 체육진흥기금 5억 8천만원을 한국투자신탁 알파 단위형 공사채로 예탁키 위하여 군수께 보고하고,
- '97. 1. 15 뉴얼턴 공사채 4호로 임의 청약함은 지휘계통을 문란케 할뿐만 아니라 결국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7 억이상의 군비손실을 초래케 되었으며,
- 현재 한국투신(주)을 상대로 소송중에 있으므로 이의 결과를 주시하여 향후 대책과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임.

② 체육진흥기금 운용시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동 조례 제3장에 의하면 체육진흥 기금의 효율적 조성.관리. 운영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있어,
- 동 기금의 예치시는 물론, 뉴얼턴 공사채 4호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에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만기 이후에야 보고하여 늑장 대처하고 있는데 조례 가 규정한바 대로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③ 노인복지기금 운용철저

- 동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에 의하면 「기금 집행은 당

해년도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는 데」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치 않음은 조례 규정을 이행치 않은 처사로 시정기 바라며,

- 동 조례 제7조에 의하면 기금의 사용계획은 「노인복지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바 지금 까지 동 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집행치 않음은 부당한 처사로, 조속히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된대로 조치 바람.

④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철저

- 동 조례 6조 ②항에 의하면 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했을시는 일정기간내에 융자금을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 '97~'98년도 융자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목적이외의 사용자가 있는바, 융자 신청시 철저하게 검토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이 긴요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기 바람.

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 개정

- 동 조례 제3조 ①항에 의하면 융자대상 사업에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나
- 행상.노점상은 도로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단속대상이 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사업수행에 융자되도록 조치 요망.

⑥ 농수산 진흥기금 조성 철저

- 동 조례에 의하면 매년 8억원 이상을 출연하여 100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기금 조성 실적이 25억원에 이르고 있음(동조례 제14조 ②항)
- 따라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기금 조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건의 사항

① 장학진흥기금조례 제정비

- 동 조례 제1조(목적)에는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 한 학생.....」으로 되어 있으며 제12조(장학생의 자격)에는 「재능 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으로 되어 있어
- 문맥의 해석에 의하면 장학생 선발 방법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례 재정비 요망.

② 장학진흥기금 수혜 장학생 확대

- 동 기금조례 제12조 ①항 3호에 의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중 도 단위 대회이상 입상자」도 동 장학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나,
- 2000. 8. 30까지 단 한명도 수혜 대상자가 없다하니 향후에는 기능.체육.예능 특기자도 수혜될수 있도록 조치 요망.

③ 노인복지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구성 조정

- 동 조례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바,
- 노인회장 및 노인복지 전문가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각종 조례의 재정비

- 각종 기금의 조성.관리.집행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현실성이 없거나 지킬수 없는 조항이 있어 스스로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현상이 초래됨.
- 따라서 기금관련 조례는 물론 화순군의 각종 조례를 일제히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기 바람.

⑤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철저

-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집행.결산등의 절차를 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이 형식적이거나 이행치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음.
- 기금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철저히 이행도록 할것이며 기금의 조성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히 파악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기 바람.